

dihydrogen citrate(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))”로 변경

다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유사성분 통합(III. 제 1. 제조 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. 중 44, 45, 46)

(1) α-알킬(C<sub>10</sub>–C<sub>14</sub>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폴리(옥시프로필렌), α-알킬(C<sub>12</sub>–C<sub>15</sub>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폴리(옥시프로필렌)(평균분자량 965), α-알킬(C<sub>12</sub>–C<sub>18</sub>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폴리(옥시프로필렌) 3개의 유사 성분을 하나로 통합

라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α-알킬(C<sub>6</sub> 이상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프로필렌) 신설(III. 제 1.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. 중 36)

마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반사용기준 개정(III. 제 2. 일반사용기준)

(1) 기구등에 남아있는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도록 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「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68호, 2009. 10. 1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수행하여야 할 위해평가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여 정하고자 「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른 관련

규정 정비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

(1)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수행하여야 할 위해평가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여 정함.

나. 위해평가결과의 공표 여부, 범위,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(안 제7조)

- (1)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해평가의 공표 여부 및 범위를 결정
- (2)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또는 언론을 통해 공표

다.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및 문구 조정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)

\*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**「먹는물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- 환경부 공고 제2009- 292호, 2009. 9. 25 -

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음료·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·부과하여 먹는샘물과 음료류·주류 등 기타샘물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먹는물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

#### **□ 주요내용**

가.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기타샘물 개발자 간 차등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균형 부과 토록 함.(안 제8조)

- (1) 먹는샘물과 음료류·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 조정할 필요가 있음.
- (2)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

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부과함.

- (3)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·부과함으로써 샘물간 부과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\*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